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왕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66

발의연월일: 2025. 4. 23.

발 의 자:서왕진・임호선・정춘생

황운하 · 김선민 · 박은정

차규근 • 김준형 • 강경숙

신장식 · 이해민 · 백선희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소기업모태펀드는 창업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결성되었으며, 그 관리·운용을 맡은 한국벤 처투자는 매년 1월 예상 회수재원과 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운용계 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있음.

그런데 운용계획을 1월에 제출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. 또한, 「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」에 따르면 계정 간 이전이국회의 심의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계정 소관기관의 동의만으로 가능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, 해당 연도 회수 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 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모태펀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·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0조제6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,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0조(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	제70조(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
등) ① ~ ⑤ (생 략)	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
	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
	계,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
	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
	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
	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
	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
	<u>여야 한다.</u>